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467
------------	-----

2023년 4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임규호 의원 외 18명

나. 제안일자 : 2023년 2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31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3년 4월 2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임규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14. ~ 2023. 2. 19.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 제출의견 : 보류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며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운행하는 시내·마을·공항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음
- 최소한의 등록요건만 갖추면 시장 내 진입과 이탈이 자유로운 사업이고 국내외 관광 및 행사를 위한 특정 이용객 운송 목적이 존치하므로, 타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이용대상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공공성 및 공익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형평성을 논하기는 어려움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14년부터 전세버스업체의 불법 지입문제와 공급과잉 문제 등으로, '24년까지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되어 있는 업계의 특수 상황이 존재함.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시행하였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효과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 한편, 전세버스 업체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객 운송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 운영으로 인해 서울시내에서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보다 타 지역의 관광산업 부가가치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많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주사무소 혹은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1) 교통정책과-2479호(2023.02.14.)

시가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업체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과다경쟁 및 안전관리 소홀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류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전세버스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절차, 보조금 관리 및 환수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에서는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부합한다고 보여짐

- 동 조례안 제2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정의하여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 사업자를 한정하는 것임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에 95개 업체 2,570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9개 업체, 1,983대는 주사무소가 서울시이며, 36개 업체, 587대는 영업소가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임

※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록현황

업 체 수			등록대수(대)		
계	주사무소	영업소	계	주사무소	영업소
95	59	36	2,570	1,983	587

주1.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 : '23.1월

주2. 주사무소가 서울시이고 타시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 현황 : 14업체, 320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할 경우 영업소를 설치<sup>3)</sup>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5대 이상을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주4)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뿐만 아니라 영업소를 포함하여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5)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4조6)에서 영업소, 차고, 운송부대시설(이하 영업소 등)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소 등’ 물리적 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재정지원까지 포함하여 관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다만, 타 시도 조례의 경우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영업소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 시도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생략>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 타시도 관련 조례 정의 현황

조례명	정의
충청남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지원대상 사업(안 제3조)

- 동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이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재정지원 대상<sup>7)</sup>, 그동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 내역, 타시도 관련 조례 운영상황<sup>8)</sup> 등을 살펴볼 때 동 조례안을 통해 대상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7) 주석2 참조

8) 타시도 관련 조례 및 지원대상 현황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지원사업 내역

지원사업	집행 년도	사업 대상	총지원액 (천원)	지원비율	비 고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	'13	2,901대	290,100	국비(50%) : 시비(50%)	- 대당 10만원 지원 ※'11.1월~'13.6월까지 DTG 장착한 차량
	'14	25대	2,500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21	1,655대	263,380	시비(50%) : 자부담(50%)	- '19.4.2. 이후 설치 차량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한도:16만원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22	1,720명	17,200	-	- 매년 지원 ※운수종사자 1인당 1만원

다만, 동 조례안 제3조제1호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동 조례안 제3조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통신비 지원 등 장기간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재정지원 대상을

조례명	지원사업	시행일자
충청남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사업 4.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2.04.11.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5.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2.31.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9.11.07.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합리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도록 수정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 동 조례안 제4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조금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동 조례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보조금의 적정성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보조금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용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보조금 관리 및 환수(안 제6조)

- 동 조례안 제6조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 및 지원중단, 축소,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지원중단, 축소, 회수에 대한 사항과 동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환수조치 당한 전세버스사업자에 대해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환수규정<sup>9)</sup>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및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원 후 각 운수회사가 투명하게 이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은 보조금 관리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업종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전산자료를 통해 운행관리(운행률, 첫막차 운행시간 준수, 배차시간 준수 등) 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sup>10)</sup> 매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지급 및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0)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다른 운송사업자와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조정(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안 제5조제2항)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67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8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부사업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다른 운송사업자와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조정(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3.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교통위원회 수정안
<p>제3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제3조(사업) &lt;제정안과 동일&gt;</p>
<p>1. 법 제50조제2항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업</p>	<p>1. -----<u>제2호에</u>----- -----</p>
<p>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u>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u></p>	<p>2. ----- -----<u>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u></p>
<p>3.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u>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u></p>	<p>3. -----<u>설치, 교체, 개선 사업</u></p>
<p>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u>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u></p>	<p>&lt; 삭제 &gt;</p>
<p>5.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u>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u></p>	<p>4. ----- <u>보수교육 지원 사업</u></p>
<p>6. 어린이용 좌석 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u>지원 사업</u></p>	<p>&lt; 삭제 &gt;</p>
<p>7.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p>	<p>5. &lt;제정안 제7호와 동일&gt;</p>

제정안	교통위원회 수정안
<p>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lt;생략&gt;</p> <p>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lt;제정안과 동일&gt;</p> <p>②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p>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3.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